

의안번호	2204081
의 퇴 인	박지원의원
회 답 일	2024.9.30.
추 계 번호	24D385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른 제출자료 목록 작성을 담당하는 인력의 증원으로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 기간 동안 총 1억 3,463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제출받은 자료의 목록 작성 (안 제89조의11) 신설	28	25	26	27	28	1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9조의11(자료의 보관) 신설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부터 제89조의6 ¹⁾ 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함	의무규정

- 1)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협회의 위임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의 기재사항,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제50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건 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정변호사에 대하여는 제89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하 이 조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89조의11(자료의 보관) 신설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법조윤리협의회는 현재 제출받은 자료의 원본을 3년 동안 보관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자료 목록 보관으로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에서 제외함
- 개정안에 따른 제출자료 목록 작성을 담당하는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현행법 제89조의4부터 제89조의6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는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일부터 2년 동안의 수임 자료,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를 법조윤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개정안에 따라 법조윤리협회는 제출받은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함

에서 “퇴직공직자”라 한다)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이란 퇴직공직자가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은 법무법인등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에도 적용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윤리협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2023년 하반기 공직퇴임변호사는 911명이고, 특정변호사는 1,304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른 제출자료 목록 작성과 관련한 업무량 증가로 기존 인력 외에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2018~2023년 자료제출 대상 변호사 증가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공직퇴임 변호사	477	437	520	507	591	569	673	666	730	761	905	911
	914		1027		1160		1339		1491		1816	
특정 변호사	855	905	829	958	974	1179	1150	1165	1024	1261	1225	1304
	1760		1787		2153		2315		2285		2529	
합계	2674		2814		3313		3654		3776		4345	

주: 현행법은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입 자료와 특정변호사의 수입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현황은 운영상황보고서에서 제외됨
자료: 법조윤리협의회 국회 제출 운영상황보고서(2024.5.)

- 법조윤리협의회 사무국 직원은 현재 총 7명으로 과건인력을 제외하면 사무국장 1명, 과장 1명, 조사업무 담당 대리 1명, 회계업무 담당 주임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출자료 목록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증원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인력 증원에 따른 비용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법조윤리협의회 운영비는 변호사법 제89조의3제4항²⁾을 근거로 법무부·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가 분담하여 보조금(대한변호사협회는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2023년 대법원으로부터 법조윤리협의회 지원예산을 법무부로 이관함에 따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1:1의 비율³⁾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참고로, 법무부 '변호사제도 선진화' 사업에 2024년 기준 총 2억 3,208만원(인건비 1억 3,764만원 포함)이 편성되어 있음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⁴⁾

2) 제89조의3(윤리협회의의 조직·운영 및 예산) ④ 정부는 윤리협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윤리협회의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2023년 2억 7,406만원, 2024년 2억 3,208만원으로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매년 2억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1의 비율로 가정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제출자료 목록 작성에 필요한 인력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인건비,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로 나뉨⁵⁾
 - (인건비)
 - 증원 인력은 법조윤리협의회 의견을 참고하여 최소인원인 1명으로 가정
 - 보수는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⁶⁾의 신입사원 평균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함
 - 기관부담금은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공기관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⁷⁾을 적용하여 산출함
 - (기본경비) 기본경비는 인건비에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의 인건비 대비 경상운영비 비율의 평균(17.4%)를 곱하여 산출함
 -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2026년 일회적으로 발생하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공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⁸⁾를 적용하여 산출함

최근 5년 간 국고보조금 등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법원행정처	144	144	176	146	—
법무부	144	144	176	168	274
대한변호사협회	200	200	200	200	200

자료: 법조윤리위원회 국회 제출 운영상황보고서(2024.5.)

4) 명목임금상승률(2024. 7.)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임금상승률	2.9%	3.4%	3.2%	3.2%	3.2%	3.2%	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증원되는 인력 규모와 법조윤리협회의 의견을 고려할 때 법조윤리협회의 내의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여 임차료를 별도 추계하지 않음

6)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있음

7) 공공기관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2024. 7.)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관부담 요율	11.1%	11.2%	11.3%	11.4%	11.5%	11.6%	1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8) 2026년 공공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7,047,000원임

[표 2] 인력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수	38	39	40	41	43	200
기관부담금	4.3	4.4	4.6	4.8	5	23
기본경비	7.2	7.5	7.8	8	8.2	22
자산취득비	7	—	—	—	—	25
합계	56	51	52	54	56	26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전제에 따라 법무부가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른 제출자료 목록 작성을 담당하는 인력의 증원으로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억 3,463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제출받은 자료의 목록 작성 (안 제89조의11)	28	25	26	27	28	1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